

공 시 송 달 공 고

중앙시장 내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(행위의 금지)를 위반하여 동 규정 제15조(처분의 사전통지)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벌점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제 목 : 중앙시장 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
2. 법적근거 :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
3. 공시송달 대상 : 총2명

허가번호	성명	점용위치	주소	비고(위반사항)
중앙시장 제16호	최*기	중구 황학동 757도	서울시 중구 황학동	허가된 점용면적 이외의 도로에 물건 적치
중앙시장 제12호	최*수	중구 황학동 757도	서울시 중구 황학동	허가된 점용면적 이외의 도로에 물건 적치

4. 공고기간 : 2024. 6. 7. ~ 2024. 6. 21.(14일간)
5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6. 공고내용

- 귀하께서 중앙시장 내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 및 도로점용허가 조건 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규정 제15조 (처분의 사전통지)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벌점처분 사전통지 하오니, 이의가 있는 경우 **2024. 6. 10.(월)까지 의견을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사전통지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벌점 30점 처분이 부과되며, 위반횟수 및 누적벌점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 기준

-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
 - 1회 위반 시 : 시정명령 및 벌점 30점
 - 2회 위반 시 : 영업정지 5일 및 벌점 30점 ➡ **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즉시 허가취소**
 - 3회 위반 시 : 영업정지 10일 및 벌점 30점 ➡ **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즉시 허가취소**
 - 4회 위반 및 누적벌점 120점 시 : **허가취소**

-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 정비1팀(☎02-3396-60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2024. 6. 4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